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66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윤준병 · 이성윤 · 박민규
이재관 · 이정문 · 임오경
김 현 · 홍기원 · 이춘석
안도걸 · 서영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등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교육·지원 사업, 임업경제사업,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임업의 경우 농가 및 어가에 비하여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고, 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인하여 자금 조달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중앙회의 사업 중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에 ‘이자 보전 등 금융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회원에 대한 이자 보전 등의 금융 지원을 통하여 경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임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기능 및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가 임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임업의 소득 기반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음.

이에 중앙회의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의 세부항목에 이자 지원을 포함하여 중앙회가 자체 재원 활용을 통해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임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제86조의8 및 제108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 중 “임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의”를 “임업의”로 한다.

제86조의8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 사업
5. 임목의 수확 및 수집·가공·유통 사업
6.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 관련 시설의 조성·운영 사업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한 산림 분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제108조제1항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이자 보전 등 금융 지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6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u>임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u> <u>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6조의2(목적) ----- ----- -----<u>임업의</u>----- ----- ----- ----- -----.</p>
<p>제86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86조의8(사업)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 사업</u></p> <p>5. <u>임목의 수확 및 수집·가공·유통 사업</u></p> <p>6. <u>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 산림 관련 시설의 조성·운영 사업</u></p> <p>7.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u>」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u>바이</u></p>

<p>4.·5. (생략)</p> <p>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2. (생략)</p> <p>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 마. (생략)</p> <p><신설></p> <p>4. ~ 10. (생략)</p> <p>②·③ (생략)</p>	<p><u>오에너지를 활용한 산림 분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u></p> <p>8.·9.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제108조(사업) ①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가. ~ 마. (생략)</p> <p><u>바. 이자 보전 등 금융 지원</u></p> <p>4. ~ 10.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